# 정부합동감사결과

## 시정·주의 요구

**제　　목**　**임산물 유통차량 사후관리 부적정**

**기 관 명**　충청남도 천안시, 부여군

**내　　용**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, 교환,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, 교환,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그리고 사업관리주체(시·군)는 농림축산식품부훈령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[1]은 사후관리기간[2] 중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또한 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」 제6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--

1) 부동산(토지, 건물 등), 부동산의 종물(건물내 기계설비, 비닐하우스 등),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(이동식 5백만원, 고정식 10백만원 이상), 부동산이 아닌 시설

2)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(이동식 5백만원, 고정식 10백만원 이상)는 5년 기준(개별특성 및 사용·관리환경 등 고려 ±2년)

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2015년도 임산물(표고) 유통기반조성을 위해 정명섭에게 냉동탑차 구입비용 8,000,000원(국비 4,000,000원, 도비 2,000,000원, 시비 2,000,000원)을 지원하여 2015. 12. 21.자로 냉동탑차를 신규로 구입 등록하였다.

따라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○○○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 그러나 ○○○이 냉동탑차 신규 등록 후 7개월이 경과한 2016. 7. 26.자로 임의로 ○○시스템(주)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2017. 11. 15. 감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.

또한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2016년 임산물(밤) 유통기반조성을 위해 ○○○에게 냉동차량 구입비용 5,500,000원(국비 2,750,000원, 도비 1,375,000원, 시비 1,375,000원)을 지원하여 2016. 10. 21. 냉동탑차를 신규로 구입 등록하였다.

따라서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○○○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 그러나 ○○○이 냉동탑차 신규 등록 후 9개월이 경과한 2017. 7. 27.자로 임의로 ○○○(6*****-1******)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2017. 11. 15. 감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[3].

[표] 임산물유통차량 지원현황

3)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2015~2017년 임산물유통차량 지원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, ○○○은 2017. 11. 22.자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(○○○→○○○) 받았음

| 시·군 | 지원현황 | | | | | | | 소유권 이전현황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년 도 | 목 적 | 구입금액(원) | 지원금액(원) | | | 지원자 | 이전일 | 소유자명 | |
| | | | | 국 비 | 도 비 | 시 비 | | | | |
| | 합 계 | | 41,905,000 | 6,750,000 | 3,375,000 | 3,375,000 | | | | |
| 천안시 | 2015 | 표고 재배 | 22,658,000 | 4,000,000 | 2,000,000 | 2,000,000 | ○○○ | 2016. 7.26. | ○○시스템(주) | 2015.12.21. 신규등록 |
| 부여군 | 2016 | 밤재배 | 19,247,000 | 2,750,000 | 1,375,000 | 1,375,000 | ○○○ | 2017. 7.27. | ○○○ | 2016.10.21. 신규등록 |
| | | | | | | | | 2017.11.22. | ○○○ | 감사기간 중 이전 |

※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**조치할 사항** **충청남도 천안시장은**

**[시정]** 중앙관서의장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천안시 ○○○에게 지급된 보조금 8,000,000원(국비 4,000,000원, 도비 2,000,000원, 시비 2,000,000원)은 반환받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**충청남도 부여군수는**

**[주의]*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임의로 이전 등이 되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